

독촉 후 집행

독촉장의 납부 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본연금기구 연금사무소는 사업주의 재산^{*2}을 조사한 후 재산 압류 및 환가 처분을 진행합니다.

일부 경우는 이 집행을 국세청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지도

일본연금기구 연금사무소는 사업주가 가능한 한 빨리 체납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납부 계획을 세우도록 재산 압류 및 환가 처분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월 납부 금액을 포함한 계획을 승인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사업 지속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분할 납부 계획을 허용하는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제도에는 압류된 재산의 환가 처분 유예도 포함됩니다(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여기에는 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일부 면제가 수반됩니다.

(2) 재산 조사

일본연금기구 연금사무소는 사업주(법인 또는 기타 법인)의 금융기관 예금,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필요한 경우), 토지와 건물 및 기타 항목을 조사합니다.

(3) 재산 압류 및 환가 처분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합니다^{*2}. 압류된 재산 중 금융기관 예금, 외상 매출금 등은 즉시 채무 상환에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압류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항목을 공개 매각하여 금전적 가치로 전환합니다.

(4) 체납 정리의 국세청 위임

체납 보험료가 많은 사업장이 의도적으로 납부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본연금기구는 체납 정리를 국세청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독촉장에 명시된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체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그 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걸린 일수^{*3}에 따라 보험료 금액(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절사)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3} 본래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